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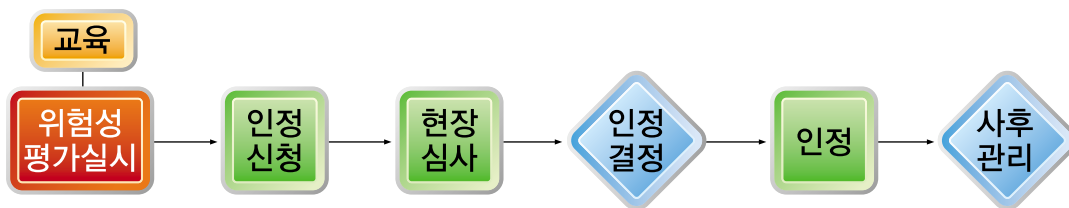
##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 법 제29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 2013년도에 한 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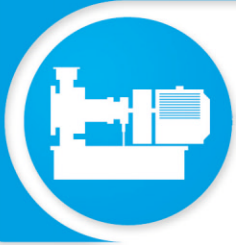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는?



-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 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법령마당
-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